

성인학습과정 학사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22. 3. 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인학습과정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“성인학습과정”이란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성인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성인학습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총칭한다.

② “성인학습과정 학과”란 성인학습자를 모집하여 성인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.

③ “성인학습자 교육과정”이란 성인학습자 학과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제3조 (입학자격) 성인 학습과정 학과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 이상의 학력(방송통신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포함)을 가진 만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
2.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의 성인 학습자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)

제4조 (교육과정 편성) ① 성인학습자 교육과정은 총 75학점 이하로 편성한다.

② 성인학습과정 교양 교과목은 10학점 이내에서 별도 편성한다.

③ 성인학습과정 전공 교과목은 65학점 이내로 편성한다.

④ 현장실습은 매 학기 개설할 수 있다.

제5조(학점인정) ① 성인학습자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칙 31조의 11의 1호에서 6호에 근거하여 입학전 선행학습에 대해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세부 사항은 「수원과학대학교 성인학습과정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 과 「수원과학대학교 성인학습과정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6조(유연학기 운영) ① 성인학습자 학과에서는 학칙 제8조의 2항에 따라 유연학기제 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세부 사항은 「수원과학대학교 유연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7조 (수업방법) ① 수업은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출석수업, 원격수업,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한 수업 및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출석수업은 교내에서 주중 또는 주말(토요일)에 운영하되, 필요에 따라 산업체 등 외부 강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8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인학습과정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사와 관련된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5-0-38 성인학습과정 학사 운영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